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74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0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1) 관광산업 투자에 대한 인식 저조,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울 관광경쟁력 지속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서울 관광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위기상황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탄력적 재정 운용과 서울관광 컨트롤 타 위인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해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 여 관광 지원체계 근본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 관광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며, 그 존속기간은 2024년까지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2) 기금은 서울관광진흥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그 조성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 (3)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부터 제15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없음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사유서 참조

(3) 기 타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안의 배경

○ 이 조례안은 2014년 이후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에 접어들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던 시점에 사드(THAAD),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외생변수로 인 해 관광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관광경쟁력 성장의 한계에 직 면하며 앞으로 위기상황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운용을 통해 관광산업의 위기대응력 제고 및 업계의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즉각적, 신축적인 관광업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브기능을 담당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서울관광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나. 기금 설치 · 운용의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해 운용되지만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에서 기금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5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 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이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 있음.

다. 서울시 기금 현황

○ 서울시 기금은 2020년 현재 23개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붙임 1), 2019년도말 조성액은 약 3조 3,559억원에 이르고 있음.

다. 관광진흥기금

○ 정부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 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 여 1973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기반 확충, 국내관 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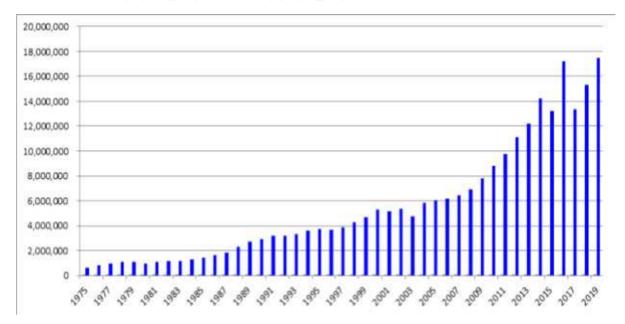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09년), 전라남도 (2017년), 경상북도(2018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2015년), 경상남도 통영시(2015), 대전광역시유성구(2019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 · 운용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관광분야 예산투자액은 총 1,049 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3억(21.3%), 관광진흥기금이 825억(78.6%)을 차지하고 있음(붙임 2).

라. 조례안의 검토

(1) 제안의 배경

○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 이후 관광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던 시점에서 메르스(MERS), 사드 (THAAD)와 같은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아 관광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외래관광객 수도 급격한 부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외래관광객 연도별 입국 통계(1975~2019)〉



- 외부적 요인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위기 대응력 제고와 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관광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서울 관광 거점 으로 기능하며 관련 기관 및 사업체간 구심점 역할을 할 공간 (붙임 3)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 1년 단위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서울관광 콘트롤타워인 서울관 광플라자 조성을 위해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광 지원 체계를 혁신하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제안되었음.
- (2) 기금의 성격 · 용도 · 규모 및 재원
 -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성, 융자성, 적립성, 기타 기금으로 나눌 수 있음.

- 사업성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기금이고, 융자성 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수행하는 기금이며, 적립성기금은 장래의 지출을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기금이고, 기타 기금은 위의 세 가지 외의 목적을 가진 기금으로 구분 가능함.
- 조례안에 따르면 이 기금은 (i) 서울관광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기금의 성격과 (ii)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마련을 위한 적립성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계정도 (i) 서울관광진흥계정(사업관리기금)과 (ii) 서울 관광플라자계정(적립성기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 서울관광진흥계정은 '21년부터 매년 50억 규모로 사업관리기금 을 편성하여 서울관광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비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관광진흥기금 사업관리기금 사업예시(안)〉

- ① 관광사업체 긴급지원센터 운영(업계 자금지원 상담. 피해상황 접수 등)
- ② 위기 발생 시 서울관광 피해현황 및 관광생태계 파급효과 조사
- ③ MICE 안심서비스(보험+방역) 지원
- ④ 실직 상태에 놓인 관광종사자를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 ⑤ 위축된 관광수요 진작 대책 마련(대규모 축제,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 및 시행
-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50억원을 적립하여 '25년에 서울관광플라자 건물매입비와 개관을 위한 인 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 이 기금의 조성규모는 2024년까지 1,200억원(서울관광진흥계정 200억, 서울관광플라자계정 1,000억)이며, 서울관광플라자계 정은 2025년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집행하고, 서울관광진흥계정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운용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사료됨.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규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300억	300억	300억	300억	
서울관광진흥계정 (비융자사업 추진)	50억	50억	50억	50억	50억
서울관광플라자 계정	250억	250억	250억	250억	
(서울관광플라자 매입비)	\(\(\)	4년긴	1,000억		

○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예정인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대상 기금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기타수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관광플라자 임대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가 기금 자체 재원마련을 위해 관광 숙박세도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이는 법 개정을 요하는 장기적인 검토과제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

한편,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화하여 추진"2)함이 원칙임.

^{1) &}quot;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85)

^{2)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p.274

(3) 기금 조성 · 운용의 필요성

○ 유례없는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아 관광생태계 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관광 위기 대응·관리를 위한 탄력적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관리기금 조성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금 운용에 있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³⁾을 근거로 하여 행정의 편의를위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끼워넣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서울관광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사업체들을 유기적으로 집적화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적립성기금 조성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이 이미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 ~2023)"에 1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반영되어 있는 바,
- 여기에서는 2020년 건물 매입에 방점을 두었고, 서울관광재단 이 운영주체로서 관리 운영하며 시설물 운영 수익금(임대수익 등)은 다시 '서울관광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0년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붙임 4),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 2019년 9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2020년 임대 개관(소요예산 75억)으로 변경되었으며(붙임 5),
- 2020년도 예산 중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에 서울관광플라자 조 성을 위한 65억원이 반영하는 등 변화를 겪어왔음.
-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 1,000억원의 예상 사용 내역은 건물 매입비용 879억원과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 120 억원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 항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사료됨.4)

(4) 조무별 검토

-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기금의 설치 규정(안 제1조~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기금 계정의 구분(안 제4조), 기 금의 재원과 용도(안 제5조~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7조~제15조)의 체제로 규정되어 있음.
-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24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상 시급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등의 수요도 충족시키기 어려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청사 및 연수원 건립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후순위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가 제정된 바 있음(2016년).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서울관광진흥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 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을 밝히고 있음.
-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서울관광진흥계정과 서울관광플라 자계정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음.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제8조), 운용계획 및 결산(제9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0조~15조)에 관해서는 위원회설치 규정(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안 제13조), 위원회의 개최(안 제14조)의 순서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효과가 커서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경제적 효과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과소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지 원 필요성이 크고, 재정정책의 일부로서 기금의 역할이 중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관광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관광 투자, 그리고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관광 허브기능을 수행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할 것임.

- 기금의 설치 이후 운용의 측면에서는 운용기준의 탄력성을 높이고 유연하게 적용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되 기금운용의 통제와 관련, 사업성 심사, 성과평가는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임.
- 한편, 관광체육국에서는 서울관광플라자 장기 조성 방안으로 세운4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건물 매입을 추진할 예정인 바,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세워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 1

서울특별시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재정투융자기금	1992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965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1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소재 종소기업에 투자지원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 업 수행
기후변화기금	2007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촉진
사회투자기금	2012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송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 후관리
성평등기금	1996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199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수득향상과 복리증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3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3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감채기금	2001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 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남북교류협혁기금	2004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007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05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지역개발기금	2017	지역개발사업 임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 기금을 설치, 운용
도시재생기금	201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 기반 마련
기반시설설치기금	2020	대규모 부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확보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예산체계

(단위 : 처워)

일반회계		
일마이경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구축

22,337,962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8,904,150

제주관광경쟁력 강화 추진(56억)

·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제주국제면세사업 박람희, 제주한류페스티벌,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등 제주광광공사 위탁사업 추진

관광객 환대서비스 개선(20억)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12억)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문화유산 답사, 활동비, 상해보험료 등

관광산업 육성

2,487,191

관광산업 육성(23억)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지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상품 지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관광기념품 육성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연구,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판광종사자 역량 강화(1억)

전세버스 관광종사자 교육 및 토론회, 관광안내사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 및 축제 육성

5.239,280

컨벤선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0.3억)

· 각종 MICE 및 국제회의 유치 제안서 제작

문화·관광 축제 지원(2억)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지정 시상금

제주올레 슬로우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0.4억)

컨벤선센터운영 활성화 지원(49억)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

5.399,900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대도시 집중 세일즈(13억)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33억)

 해외관광 이미지 광고 추진, 중국 일본 동남아 구미주 등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온라인 마케팅 추진,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7억)

중국협력 기반 조성

133,500

중국정책 및 교류업무 추진(1억)

대중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주요인사 언론사 초청(0.3억)

관광진흥기금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 구축

41,829,442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조성

41.129.442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34억)

 시티투이버스 촬성화, 제주섬 글로벌 에코루어, 시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등

재주판광 정쟁력 강화(116억)

 웰큅센터 시설관리비,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문화판광축제 지원(4억)

· 제주올레 글로벌마케팅 사업,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컨벤선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41억)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시설관리비 지원, 컨벤션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 사업 등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43억)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 지원, MICE 홍보·마케팅, MICE 산업 청년인재 양성, 제주대표 유니크베뉴 선정 및 지원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38억)

· 국내거점 잠세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FIT·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일본 관광시장 안정화 추진 등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128억)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관광산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

700,000

관광산업 육성(6억)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꿈니무 인재양성,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관광종사원 역량강화(1억)

국내여행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 강화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

453,600

DEC SIGN

50,000

재무활동비

40,218,687

예치금(302억)

통합관리기금 예탁(100억)

붙임 3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공간 구성

□ 서울관광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간 구성

- 관광정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제반시설(사무공간, 컨벤션홀 등) 구축
- 미래관광 기반(창업, 협업 공간) 조성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공간 마련

□ 서울관광플라자 공간 개요도

※ 전용 2,000평 기준으로 작성한 조성(안)으로 구체적인 건물 확보 후 변동 가능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 중 일부

고제 13 서울 관광 플라자 조성 및 거버넌스 강화

현황 및 실태

-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연계된 융·복합산업으로 관련기관 및 사업체간 유기적 집적화가 요구되나. 현재 서울에는 구심점 역할 공간(시설) 부재
 - 한국관광공사 舊 사옥에는 관광 분야 유관기관이 집적되어 서울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15년)으로 각 기관 분산
 - ※ 한국관광공사 구 사옥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해외관광청, 각 시・군의 서울 사무소와 종합관광 안내센터, 의료관광센터 및 관광정보자료실 등이 위치하여 관광 정보가 집중되었음
- 서울관광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안보이슈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추진방향

- 서울 관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서울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서울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정 전반에 관광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관광인지적 접근 강화를 위한 '관광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3 추진계획

- □ 도심 내「서울 관광 플라자」조성
 - 조성위치 : 유관기관 집적 및 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서울 도심 내 조성
 - 조성방안 : 민간·공공 건물 매입 및 교환 우선 추진, 신규 건립방안도 검토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2019년) → 건물 매입 및 기능 집적(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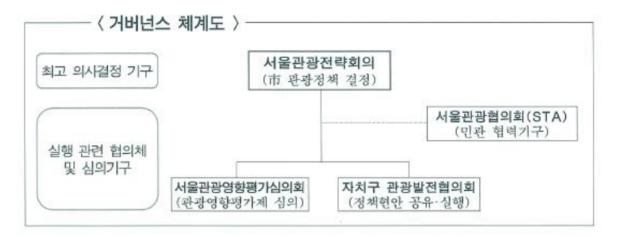
○ 주요기능 : 국내외 관광 유관 기관 집적화로 서울관광 핵심 허브 기능 수행

- 서울관광재단, 관광 관련 협회·단체, 해외관광청, 타 시·도 서울사무소, 서울종합 관광정보센터, 무장애관광지원센터 등 관광 관련 기능 집적 → 시너지효과 창출
- 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테미, 관광 R&D 지원센터 등 설치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 관리운영 : 서울관광재단이 운영주체로서 '서울 관광 플라자' 관리 운영

- 시설물 운영 수익금(임대수익 등)은 '서울관광기금' 재원으로 조성

□ 서울관광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서울시장 주재「서울관광 전략회의」확대 운영(반기별)

- 구 성 : 시장단, 서울시 관광 관련 실·국·본부장, 서울관광재단 대표 등
 ※ 필요시 관광업계, 학계, 자치구 등 참여
- 기 능 :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관광정책 및 실·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

○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관광 협의회(STA)」 구성·운영(반기별)

- 구 성 : 범 관광업계(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NGO 및
 시민, 공공기관(시, 자치구, 재단 등) 등 참여
- 성 격 : 민관거버넌스형 협력기구,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기획·실행
- 운 영 :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서울시장, 민간대표)

Ⅴ. 재원 투자계획

□ 총 투자규모 : 6,585억원

(단위 : 억원)

전략 및 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585	462	2,759	1,121	1,213	1,030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558	52	109	122	136	141
① 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	248	31	54	54	55	55
②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310	20	55	68	81	86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매력도시	1,251	137	222	264	303	325
③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161	14	28	40	39	41
④ 서울관광 M.V.P(Must Visit Place) 코스 조성	89	8	23	21	16	21
⑤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1,001	114	172	204	248	264
편리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관광도시	510	83	101	107	110	109
⑥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7	4	13	17	17	17
⑦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관광환경 조성	443	79	88	90	93	92
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319	70	146	423	451	230
⑧ 관광산업 지원체계 혁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955	47	69	340	362	136
⑨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일자리 창출	181	7	43	43	44	44
① 지역주도형 관광 생태계 조성	184	17	34	40	45	50
대표도시로서 책임을 다하는 관광리딩도시	2,946	121	2,182	205	214	225
① 국내외관광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269	9	54	63	69	75
⑫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677	112	129	142	145	150
① 서울 관광 플라자 조성	2,000	5	2,000	-		-

2019년 9월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중 일부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廳) 조성 관련 설명자료

(19.9.2. 관광정책과)

국내 외 관광 유관 기관 집적화로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서울 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사업개요

-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도심내 2.000평 규모 건물 임대(2020년 和)
- 주요 기능 및 구성(안)

서 울 관 광 민 관 협력 활성화, 위기극복 컨트롤 타워 구축

클 러 스 터│ •서울관광재단 등 관광 및 MICE분야 협·단체, 공유회의실 등

서 울 관 광 서울관광 창업 및 일자리 육성, 서울관광 고부가 비즈니스(MICE) 육성 인큐베이터 ·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 관광일자리지원센터, 회의공간, 화상회의실 등

서 울 관 광 서울관광 R&D 지원, 스마트관광 촉진 등 관광생태계 혁신 이노베이터 · 서울관광 R&D 지원센터, 관광자료실, 스마트관광 지원센터 등

서울관광 커뮤니케이션센터 국내·외 관광객 지원, 국제 및 지방 관광협력 활성화

- 서울종합관광정보센터, 의료관광정보센터, 불편처리센터, 해외관광청, 관광객편의시설, 지역관광공사 합동연락사무소 등
- 관리운영 : 서울관광재단이 운영주체로서 관광플라자 관리운영
- **소요예산(안)** : **7,500백만원(**'20년 예산 편성/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리모델비용 등)

추진현황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19.5~)
- 종합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 자문(6.24~27)
 - 대표적 업체 4개사(JLL, AVISON YOUNG, CBRE, Savills)와 건물확보 방안 자문 ※ 중심부 임대차 시장 동향, 건물확보 절차 및 필요 검토 사항 등 자문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관광플라자 조성에 관해 지난 회기에 상임위 위원들이 임차보다는 매입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보류했는데, 그 동안 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답변: 6월 정례회에서 보류된 이후 위원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보류된 사유에 관해서도 계획을 세워 설명드렸음.

질의 : 관광플라자 조성은 시장의 요청사항인지?

답변: 업계의 요청사항임.

질의: 장기적으로 세운4구역의 건물을 매입하여 관광플라자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꼭 4대문 안을 고집해야 하는가? 다른 지역은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 연구용역 결과 적정입지로 제시되었고, 시민접근성, 정책효과, 확장성을 고려할 때 도심 업무지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성된 이후 강북이나 강남 등에 분원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질의 : 숙박세는 관광객이 감소한 지금 시점에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답변: 숙박세는 호텔 투숙객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미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 시행중임. 장기적으로 검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관광플라자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계획이 부 실하고 로드맵이 보이지 않으며 정책방향과 성과가 불문명 하여 설득력이 약하고, 관광플라자 조성이 관광업계의 요청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계에서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현재 업계가 너무 어려워 기대할 수는 없고, 추후 다시 관광이 활성화되면 업계에서도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겠음.

질의: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고, 메르스, 싸드로 인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함. 서울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관광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고 일찍 추진했어야 한다.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적립을 해서라도 조성하면 관광발 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답변: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려는 것임.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를 다 거쳐야 함.

질의: 지금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 보다 향후 관광이 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 것 아닌가? 관광진흥계정 기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산과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관광진흥계정과 적립성계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운용계정은 일반회계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업종은 괜찮아도 관광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광분야를 위해서만 추경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질의: 관광플라자를 조성하며 서울시 소유가 되는지, 재단 소유가 되는지?

답변: 완성되면 재단에 넘겨주어 재단이 청사로 사용하며 운용하 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관광진흥계정 기금의 경우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금계정의 명칭을 수정하 고 기금의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제1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 정"으로 함.
-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 원계정"으로 함.
-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574 2020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관광진흥계정 기금의 경우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금계정의 명칭을 수정하 고 기금의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제1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 정"으로 함.
-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 원계정"으로 함.
-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서울관광 <u>진흥</u> 계정 2. (생 략)	제4조(계정의 구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 <u>진흥</u>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그 밖의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비용 등 ②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① <u>긴급지원</u>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관광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등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
 - 2.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한다.
 - 1. 기금운용관: 관광체육국장
 - 2. 분임기금운용관: 관광정책과장
 - 3. 기금출납원: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 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 2.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 3.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 3. 관광 관련 학계·업계·언론계 전문가
-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광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관광정책과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 ④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